

2026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 04. 01.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규모 (추정가액)	[일반관리비]		[이윤] (노+경+일) x 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노) x 율		(재+노) x 율			(재+노+경)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재+직노) x 율 + 기초액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중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주2)}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1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5.0	15.0	4.6	4.6	5억 미만	8.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주1)}				
	7~12개월 (365일)	15.2	15.2	4.7	4.7								5억 미만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13~36개월 (1095일)	15.4	15.4	5.0	5.0												
	36개월 초과 (1096일)	16.2	16.2	5.5	5.5												
10억 -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4.7	14.7	4.7	4.7	30억 미만	8.0	6.5	15.0	건축공사	0.07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5억 미만			
	7~12개월 (365일)	14.9	14.9	4.8	4.8									5억 ~ 50억 미만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13~36개월 (1095일)	15.1	15.1	5.1	5.1												
	36개월 초과 (1096일)	16.0	16.0	5.6	5.6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4.8	14.8	5.1	5.1	50억 - 100억 미만	6.5	5.0	12.0	산업·설비공사	0.16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층)	0.32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15.0	15.0	5.2	5.2									50억 이상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13~36개월 (1095일)	15.2	15.2	5.5	5.5												
	36개월 초과 (1096일)	16.0	16.0	6.1	6.1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4.3	14.3	5.3	5.3	300억 - 1000억 미만	5.0	4.5	10.0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7~12개월 (365일)	14.5	14.5	5.4	5.4												
	13~36개월 (1095일)	14.7	14.7	5.7	5.7												
	36개월 초과 (1096일)	15.6	15.6	6.2	6.2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4.2	14.2	5.6	5.6	1000억 이상	4.5	9.0									
	7~12개월 (365일)	14.4	14.4	5.7	5.7												
	13~36개월 (1095일)	14.6	14.6	6.0	6.0												
	36개월 초과 (1096일)	15.5	15.5	6.5	6.5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직노) x 3.595		(건강보험료) x 13.14		(직노) x 4.75		(노) x 3.56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확보보험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법정부담금]		[석면분담금]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노)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요율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1등급] 1200억 이상		1.57		0.9		0.081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1.30		0.4		0.080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1.13		0.5		0.075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1.06		1.5		0.071				- 고재방 덩 공사 등 - 덩 산설공사, 제방산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1.03		0.8		0.068				· 화력, 수력, 열차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열차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산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1.02		1.1		0.084				· 터널산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터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1.01		0.6		0.084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7등급 미만		1.01		0.6		0.084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정공사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		0.6		0.084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1.01		0.6		0.084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수수료		0.5		0.084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수수료		0.3		0.08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70억 미만		[직공비]x0.0108%]x공기(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석면분담금]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율 기준으로 함)							
70억이상~120억미만		[79만 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임금채권부담금]									
120억이상~250억미만		[116만 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노) x 0.006		(노) x 0.09							
250억이상~500억미만		[186만 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 모든 건설공사 적용.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500억이상		[306만 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퇴직금제부담금]				[법정부담금]									
				(직노) x 2.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9장) 기술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법정경비 관련 규정

구분	소관부처	관련규정 링크	비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및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산정기준/(2019-286,201906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환경보전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2018-528,20180830)	
산재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5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4-77,20241230)	
고용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조달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3-235,20230706)	
건강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250101,35054,20241210)/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20250207,35043,20241203)/제4조	
연금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41220,20584,20241220)/제88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4-53,20240919)	
퇴직공제부금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2015-610,20150820)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고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